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2. 3. 17.(목)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 재단 설립 목적(안 제1조)
- 재단의 설립 등(안 제2조)
- 재단의 사업(안 제3조)
- 정관 및 이사회 등(안 제4조, 제5조)
-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성(안 제7조)
- 예산·결산, 지도·감독·검사 등(안 제9조, 제10조)

5. 검토의견

가. 조례 제정이유

- 재단법인 충북교육장학재단은 2000. 12. 자본금 전액을 충청북도 교육감과 농협중앙회 충북본부와의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설립함에 따라 조례로 정해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재단법인 충북교육장학재단은 근거 조례가 없어 조례 제정으로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학생의 현재 능력과 상황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한된 재단 장학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임.

[타 시·도교육청 장학재단 조례 제정 현황]

지역	재단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비고
강원	강원교육장학회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11.07.08. 2021.12.24.	
경기	경기교육장학재단	경기교육장학재단 지원 조례	2011.01.10. 2011.01.10.	
대구	대구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3.06.10. 2021.04.12.	
대전	대전행복교육 장학재단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	2016.06.10. 2021.12.29.	
세종	세종교육장학회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15.07.30. 2016.08.10.	
전북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10.18. 2012.10.05.	

- 또한, 정관, 이사회,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사항,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결산, 지도·감독·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재단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목 차		주 요 내 용
조	표 제	
제 명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목적	▶ 조례 제정 목적 기술
2	재단의 설립 등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3	사업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정관	▶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 정관으로 정함
5	이사회 등	▶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6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	▶ 재단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
7	재원조성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 그 밖의 수입금
8	출연금	▶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교육감 출연
9	예산·결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제출 ▶ 사업실적 및 결산서 다음연도 3월 말까지 제출
10	지도·감독·검사	▶ 재단의 업무 지도·감독 ▶ 운영상황 평가 보고 및 확인 검사
11	운영규정	▶ 세부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정
부 칙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이 타당하며,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